

대학 구조혁신 및 정원 조정에 관한 규정

제정 2014. 01. 22.

9차 개정 2021. 03. 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급변하는 대학교육 환경 및 정부의 대학정책에 대응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단과대학, 학과(부) 및 학부 내 전공(이하 “학과”라 한다) 단위의 신설, 폐지, 통합, 정원조정, 전공변경, 명칭변경 및 소속 단과대학 변경 등 교육편제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대학 구조혁신 및 정원조정’(이하 “구조혁신”이라 한다)은 단과대학 및 학과의 신설, 폐지, 통합, 정원조정, 전공변경, 명칭변경을 말하며,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과신설’은 새로운 학과를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과폐지’는 학칙 제3조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표에서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이 삭제됨으로써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는 것을 말한다.
3. ‘학과통합’은 2개 이상의 학과를 1개 학과로 합하는 것을 말한다.
4. ‘정원조정’은 학과의 입학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전공변경’은 학과폐지 후 학과신설에 준하는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을 포함한 학과 명칭변경을 말한다.
6. ‘명칭변경’은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을 포함하지 않은 단순한 학과명칭의 변경을 말한다.
7. ‘소속 단과대학 변경’은 교육편제 조정으로 학과의 소속이 다른 단과대학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8. ‘학과평가’는 구조혁신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학과 경쟁력 평가를 말한다.

제3조(구조혁신의 원칙) 구조혁신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

1. 대학교육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2.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지침 이해
3. 대학 발전계획에 의한 정책의 수행
4. 대학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
5. 대학의 평가지표 향상 및 교육부 평가 대비를 위한 조정

제4조(구조혁신의 절차) ① 구조혁신은 기획평가처장이 관장한다.

- ② 구조혁신은 매 학년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기획평가처장은 구조혁신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관련 부서장과 단과대학장, 해당 학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구조혁신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획평가처장은 <별표1>의 학과평가기준에 의거 구조혁신 계획안을 도출한다. 단, 도출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구성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수 있다.
 2. 대학구조혁신위원회 심의
 3. 교무위원회 심의
 4. 대학평의원회 심의

5. 이사회 승인

6. 기타 필요한 절차

제5조(위원회) ① 구조혁신 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구조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은 교육부총장, 교육연구처장, 기획평가처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구조혁신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교육부총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인씩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제2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결원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구조혁신의 기준) ① 학과신설은 특성화 분야 또는 학생모집과 취업에 경쟁력 있는 전략 육성 분야로 한다.

② 학과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입학정원은 계열 구분 없이 30명으로 한다. 단, 현재 30명 미만의 **학과와 야간학과는 최소입학정원에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03.05.)

③ 구조혁신을 위하여 학과평가가 필요한 경우 <별표1>의 학과평가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구조혁신 대상 학과 선정) ① 구조혁신 대상 학과는 <별표1>에 의거 1차 평가와 2차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단, 편제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야간 학과의 경우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② 학과평가 방식 및 등급비율은 <별표1>과 같다.

제9조(구조혁신 조치) ① **제8조의 학과평가 결과에 따라 구조혁신 대상으로 선정된 학과에 대하여 구조혁신 조치를 시행한다.** (개정 2021.03.05.)

② C등급에 해당하는 학과에 대해서는 제2조의 학과폐지, 학과통합, 정원조정(감축), 전공변경에 해당하는 구조혁신을 **권고한다.** (개정 2021.03.05.)

③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학과에 대해서는 제2조의 학과폐지, 학과통합, 정원조정(감축), 전공변경에 해당하는 구조혁신을 시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혁신의 권고 및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구조혁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의2(구조혁신 특례조치) ① 신입생 충원율(정원내 3.1자) 80% 미만 또는 재학생 충원율(정원외 포함, 4.1자) 70% 미만인 학과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년도 E등급으로 판정한다.

② 신입생 충원율(정원내 3.1자) 70% 미만 또는 재학생 충원율(정원외 포함, 4.1자) 60% 미만인 학과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년도 학과폐지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1.03.05.)

제10조(우수학과에 대한 지원) **제8조** 제2항의 학과평가 결과 A등급에 해당하는 학과에 대해서는 정원조정(증원), 교원 충원, 특성화 학과 선정,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간 배정, 특별예산 지원 등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03.05.)

제11조(폐지된 학과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조치) ① 제2조에 의한 학과폐지, 학과통합의 경우와 대학 정책에 따라 다른 학과로 소속이 변경되는 교원에게는 교내연구비, 연구년제 및 연수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구조혁신에 따라 소속 학과가 없어진 교원의 경우 소속변경,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을 협의할 수 있다.

③ 폐지된 학과의 재적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다른 학과로 전과를 허용하되, 세부사항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3.05.)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르며, 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기획예산부-59, 2014.1.22)

이 규정은 2014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437, 2015.7.22)

이 규정은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333, 2016.05.02)

이 규정은 개정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며, 2017학년도 학사구조개편 및 학생정원 조정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273, 2017.06.23)

이 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89, 2019.02.18)

이 규정은 2019년 0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30, 2019.06.25)

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93, 2020.03.20)

이 규정은 2020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10, 2020.05.04)

이 규정은 2020년 05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6, 2021.01.13.)

이 규정은 2021년 0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21.03.05.](#))

부칙 (기획예산팀-156, [2021.03.0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3월 0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9조의 구조혁신 조치는 2022학년도(2023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부터 적용한다.

③ 제9조의2 구조혁신 특례조치는 2021학년도(2022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부터 적용한다.
단, 제9조의2 제2항은 1년간 시행을 유예한다.

<별표1>

학과평가기준

가. 1차 평가(상대평가)

(1) 평가지표

지표	배점	세부지표	배점	비고
신입생 충원율	25	신입생 충원율(정원내)	12.5	3월 1일자
		추가모집 공고 시점의 신입생 충원율(정원내)	12.5	추가모집 공고 시점
재학생 충원율	40	재학생 충원율(정원내)	20	4월 1일자 (최근 연도는 3월 1일자 가능)
		재학생 등록률 (정원외포함)	20	1학기, 2학기 등록률 평균
졸업생 취업률	15	졸업생 취업률	15	12월 기준 취업률 통계
학과 기여도	20	재정 기여도	비용 기여도	5 세부평가기준 별도 적용
		강의 기여도	5	세부평가기준 별도 적용
		교수업적평가	10	일반전임교원 교수업적평가
계	100		100	

* 최근 3년 지표값 적용, 표준점수(T점수) 적용, 편제 미완성 학과와 야간 학과의 경우 별도 적용 가능

(2) 평가등급 및 비율(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평가등급	A	B	C	D
비율	30%	40%	20%	10%

나. 2차 평가(절대평가) : 지표 중 2개 모두 최소기준 미달 학과의 경우 E등급으로 분류

지표	최소기준	세부지표
신입생 충원율	97%	최근 3년 평균,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86%	최근 3년 평균, 정원내

다. 최종결과 판정

- (1) 2차 평가(절대평가) 결과 E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학과는 1차 평가(상대평가) 등급으로 최종 판정
- (2) 2차 평가(절대평가) 결과 E등급에 해당하는 학과는 1차 평가(상대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E등급으로 최종 판정